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 민간위탁동의의 건

의 안	3 - 237
번 호	

제출연월일 : 2004. 03. 3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방촌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를 관련 문화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유산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골자

○ 위탁범위

-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 토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성실보존 및 현상유지 관리(단, 문화재보수공사는 시에서 직접 시행)
- 유적지 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
-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대행

○ 위탁지원

- 위탁기간 : 2년(연장 가능)
- 위탁지원비용 : 연간 43,214천원
 - 인건비(상용직 및 일용직 각 1명) : 27,99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사무비용) : 15,224천원

☐ 관련계획서 : 불 임

방촌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 위탁계획

- 방촌 황희정승 유적지(반구정)의 기부채납에 따라 문화재 보존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문화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이벤트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경영전략을 민간단체에서 시행하여 문화유산 활용도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문화재 관리 및 운영 활성화
- 유적지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 행사 발굴 추진
-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 추진
- 관람객 증가시 관람료를 징수하여 지원운영비 회수

□ 위탁 개요

- 관련 근거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 위탁 대상 : 황희정승 유적지 시설물 일체
- 대상 단체 : 문화관련 단체

□ 위탁 시설

- 시설위치 : 문산읍 사목리 185외 14필지
- 시설물 : 영당, 반구정, 양지대, 재실, 고직사, 기념관, 화장실, 월헌사, 황희정승 동상, 주차장(2,061㎡, 36면)
- 소유자 : 파주시
※ 장수황씨사목종중 기부채납(2003. 5월 완료)

□ 위탁 범위

- 문화재 시설의 성실보존 및 현상 유지관리
→ 단, 문화재 보수공사는 시에서 직접 시행

- 유적지 홍보 및 관람객 유치
-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대행

□ 위탁 필요성

-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능동적인 관리로 효율성이 확대되고
-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황희정승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도시 이미지 강화

□ 위탁단체 주요 사업방향

- 연중 개방에 따른 관람객 안내 및 영상홍보물 상영
- 다각적인 유적지 홍보로 연중 관람객 증가 유도
- 기념관 정비로 다양한 계층의 교육장으로 활용
- 공공시설 및 경내 청소 관리로 청결한 관광유적지의 이미지 제고

□ 위탁 지원 계획

- 위탁 기간 : 2년 (연장가능)
- 위탁 지원(연간 소요경비)
 - 운영비 지원 : 43,214천원
 - 인 건 비 : 27,990천원(상용직 1명, 일용직 1명)
 - 일반운영비 : 15,224천원(공공요금 및 사무비용)

□ 위탁단체 선정

- 위탁단체 공개모집
 - 대 상 : 문화관련 단체 (법인 등록단체)
 - 시 기 : 위탁대상 사무 의회 동의 후
- 위탁단체 선정
 - 시 기 : 민간위탁 단체 공개모집 후

- 심 의 :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 심의위원 :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6 ~ 9명(의원 2인 포함)

□ 협약체결

- 위탁 기관 : 파주시장
- 수탁 기관 : 선정 단체 대표자
- 주요협약내용
 - 위수탁 기간 : 2년
 - 운영 관리비 전액 보조
 - 문화재 및 공공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시설관리 및 안내 요원 배치

□ 기타 행정사항

- 문화유적지 관리 위탁에 따른 소요 사업비 추경 예산 확보
 - 문화유적 관람료 징수를 위한 조례의 제정
 - 위탁기관 선정 시기까지는 파주시 직영
 - 인건비(2명) : 19,400천원
 -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 11,504천원
 - 초기관리시설비 : 9,280천원(전화, 복합사무기, 무인경비시설 등)
- ⇒ 2004년 1회 추경 소요액 : 40,184천원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견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방촌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를 관련 문화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유산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골자

○ 위탁범위

-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 토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한 성실보존 및 현상유지 관리(단, 문화재보수공사는 시에서 직접 시행)
- 유적지 홍보 및 관람객 유치활동
-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대행

○ 위탁지원

- 위탁기간 : 2년(연장 가능)
- 위탁지원비용 : 연간 43,214천원
 - 인건비(상용직 및 일용직 각 1명) : 27,99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사무비용) : 15,224천원

방촌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 위탁계획

- 방촌 황희정승 유적지(반구정)의 기부채납에 따라 문화재 보존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문화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이벤트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경영전략을 민간단체에서 시행하여 문화유산 활용도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문화재 관리 및 운영 활성화
- 유적지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관련행사 발굴 추진
-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추진
- 관람객 증가시 관람료를 징수하여 지원운영비 회수

□ 위탁개요

- 관련근거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 위탁대상 : 황희정승 유적지 시설물 일체
- 대상단체 : 문화관련 단체

□ 위탁시설

- 시설위치 : 문산읍 사목리 185외 14필지
- 시설물 : 영당, 반구정, 양지대, 재실, 고직사, 기념관, 화장실, 월헌사, 황희정승 동상, 주차장(2,061㎡, 36면)
- 소유자 : 파주시 [장수황씨사목종중 기부채납(2003. 5월 완료)]

□ 위탁범위

- 문화재시설의 성실보존 및 현상 유지관리
→ 단, 문화재 보수공사는 시에서 직접 시행
- 유적지 홍보 및 관람객 유치
-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대행

□ 위탁 필요성

-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능동적인 관리로 효율성이 확대되고
-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황회정승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화도시 이미지 강화

□ 위탁단체 주요 사업방향

- 연중 개방에 따른 관람객 안내 및 영상홍보물 상영
- 다각적인 유적지 홍보로 연중 관람객 증가 유도
- 기념관 정비로 다양한 계층의 교육장으로 활용
- 공공시설 및 경내 청소관리로 청결한 관광유적지의 이미지 제고

□ 위탁 지원계획

- 위탁기간 : 2년(연장가능)
- 위탁지원(연간 소요경비)
 - 운영비 지원 : **43,214천원**
 - 인 건 비 : 27,990천원(상용직 1명, 일용직 1명)
 - 일반운영비 : 15,224천원(공공요금 및 사무비용)

□ 위탁단체 선정

○ 위탁단체 공개모집

- 대 상 : 문화관련 단체(법인 등록단체)
- 시 기 : 위탁대상사무 의회 동의 후

○ 위탁단체 선정

- 시 기 : 민간위탁 단체 공개모집 후
- 심 의 :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 * 심의위원 : 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6~9명(의원 2인 포함)

□ 협약체결

○ 위탁기관 : 파주시장

○ 수탁기관 : 선정단체 대표자

○ 주요협약내용

- 위·수탁 기간 : 2년
- 운영관리비 전액보조
- 문화재 및 공공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시설관리 및 안내요원 배치

□ 기타 행정사항

○ 문화유적지 관리 위탁에 따른 소요사업비 추경 예산확보

○ 문화유적 관람료 징수를 위한 조례의 제정

○ 위탁기관 선정 시기까지는 파주시 직영

- 인건비(2명) : 19,400천원
-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 11,504천원
- 초기관리시설비 : 9,280천원(전화, 복합사무기, 무인경비시설 등)

→ 2004년 1회 추경 소요액 : 40,184천원

3. 검토의견

- 동 민간위탁동의의견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황희 정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문산읍 사목리에 소재하고 있는 방촌 황희정승 유적지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과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동 유적지를 민간위탁 하는데 관련법령이나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황희정승 유적지는 현재 도비지원으로 성역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문화재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력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문화재관리원 1명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유적지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문화재의 전문적인 관리는 물론 연중 개방에 따른 관람객의 안내 및 영상홍보물의 상영 등 다각적인 유적지홍보를 통해 관람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와 관광유적지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관람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현재 무료인 관람료를 유료화하여 지원운영비를 회수하는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문화재 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적으로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연장가능)으로 하고 매년 위탁기관에 약 43백만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